



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방안

- 교육용 재산 · 회계 및 이사회 운영 분야 -

2022. 4.



학교법인 감리교학원
(목원대학교)

세부 사업별 추진계획

❖ “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대학” 교육비전 연계 추진

< 추진 방침 >

- 개선방안 추진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
- 각 세부과제 실행을 위해 1년간 파일럿 테스트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의 문제점 보완 및 완결성을 제고

① 교육용 기본재산 및 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

① 기본재산 처분 시 내부 절차 강화

- 전문성 증진으로 투명성·공정성 제고

② 예결산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

- 구성원 상시참여 예결산제도 운영
- 이사회 재정소위 운영시 구성원 참관 허용

③ 재정 및 회계 정보 공개

- 수익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
- 법인 기부금 현황 및 사용 현황 공개

④ 내부 회계 관리·감독

- 정기·자체감사 체제 구축
- 부서별 운영 업무 편람 제작 및 활용

② 이사회 운영 과정에 전문성·책임성 제고

① 이사회 운영 전문성 제고

- 법인 임원진 전문성 강화
- 법인 임원 정기 연수회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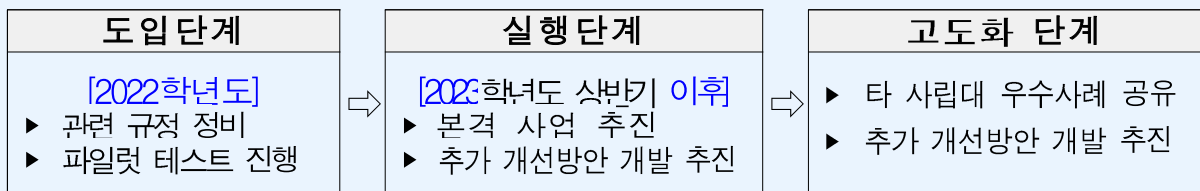
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강화

- 법인·대학 제도개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협력 수립
- 수익용 재산 창출

③ 열린 이사회 운영

- 회의록 공개 확대
- 법인 임원진과 대학 구성원의 주기적 간담회

※ 과제구성
-2개 대과제
-7개 중과제
-13개 세부과제



① 교육용 기본재산 및 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

① 기본재산 처분 시 내부 절차 강화

□ 추진 배경

-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 변경 추진 시 투명성·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절차 강화 필요(2018. 7.24. 교육부 민원조사지적사항)

□ 추진 계획

❖ 전문성 증진으로 투명성·공정성 제고

- 기본재산 처분 관련 매각 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중
 - ※ 법인 제20-185호(2020. 8.19.) 「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소집통보」
- 매각 추진위원회는 교수, 외부 법률전문가, 건축 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본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
 - ※ 매각추진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로펌을 선정하여 매각 관리 예정
-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본재산 처분 절차 등 수시 자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
- 기본재산 처분 사항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기본재산 처분등 관련 연수(한국사학진흥재단)를 통한 역량 강화

② 예결산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

□ 추진 배경

-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사립대학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
- 예결산 수립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교원노조, 직원노조, 학생회 등 학내 조직체가 증가하고 있음
- 따라서 대학의 예결산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필요

□ 추진 계획

❖ 구성원 상시참여 예산제도 운영

- 학기별로 연중 구성원의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하고, 담당부서에서는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반영 사항을 공개

공개항목	의견접수 기간	접수방법	담당부서
- 예산 편성안 (본예산 및 추경예산) - 결산	10일	학교 홈페이지 등	▷ 예산 및 경리과 주관 ▷ 관련부서 협조

❖ 이사회 예결산 의결시 구성원 참관 허용

- 이사회 재정소위 운영시 학교 구성원의 참관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학교 구성원의 재정 상황 공유
- 참관 대상, 구성원 범위, 참관 방법, 확정 결과를 비롯하여 참관인 실명 등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 ※ 참관 신청방법 및 관련 서식 등 별도 계획 수립

관련 규정 개정 반영 요소

- ▷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8조(위임 직제 및 직능) 근거로 반영
- ▷ 학교법인 1-1-17 재정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구성원 참관에 대한 내용 반영

③ 재정 및 회계 정보 공개

□ 추진 배경

-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, 총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로 부적절한 사용 예방
 - 총장 업무비 사용 내역과 더불어 이사장의 업무비 사용 내역도 공개
 - ※ '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'(교육부령 212호)으로 수의계약의 조건 명시
- 그간 법인사무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연간 기부금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공개 필요
 - ※ 학교 기부금은 월별기부 현황 및 전체 기부현황을 공개하고 있음

□ 추진 계획

❖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

- 학내외 관계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학교 홈페이지의 메뉴에 법인 및 학교의 '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현황'을 공개하여 청렴도 제고
- 국립대 수준에 걸맞는 공개 범위, 시기, 위치 등 세부 사항 별도 지침으로 결정

대상	시기	공개내역	담당부서
수의 계약건 (일천만 원 이상)	반기별 (연 2회)	건명, 계약개요(계약구분, 계약일, 계약금액), 수의계약 사유 등	▷ 구매·계약과
업무추진비 현황 (이사장 및 총장)	월별	건별 사용처, 금액, 사용 방법 등	▷ 법인사무국 및 비서실

❖ (법인)기부금 현황 및 사용 현황 공개

- 기부금액 및 지정현황, 사용 내역 등을 연 2회 투명하게 공개하여 발전기금의 모금, 집행, 공개의 선순환 구조 확립

④ 내부 회계 관리·감독

□ 추진 배경

- 정부는 대학의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(Internal Control System)을 요구하고 있음
- 따라서 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학사·인사관리 등 법인·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

□ 추진 계획

❖ 정기·자체감사 체제 구축

- 최근 우리 법인에서는 감사 규정을 개정(2021.12.29.)하여 정기감사와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
-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연수 실시, 내외부 감사전문가(회계사 등) 초빙 등 적극행정 실시

제3조(감사의 구분)

- ① 생략
- ② 정기감사는 자체감사, 법인감사, 외부감사로 구분하며, 자체감사는 연 1회로 하여 매학년도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2.29.>
- ③ 법인감사와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31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준용하여 실시한다. <신설 2021.12.29.>
- ④ 수시감사는 이사장, 총장의 지시나 각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2.29.>

제5조(감사부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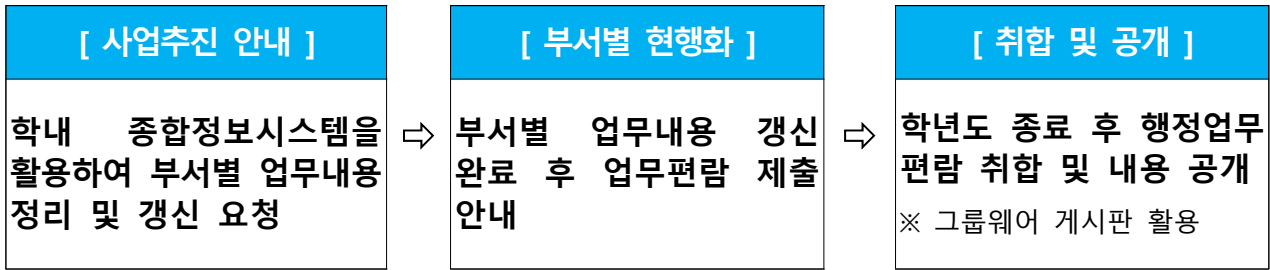
감사담당자(감사인)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임명하고, 감사의 주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12.29.>

1. 법인감사 관장 부서 : 법인사무국<신설 2021.12.29.>
2.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관장 부서 : 학교의 평가·감사팀<신설 2021.12.29.>

❖ 부서별 운영 업무편람 제작 및 활용

- 우리 대학의 교육행정이 특정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, 업무수행의 방향 및 기준 등 표준운영절차(SOP)를 제시할 수 있는 업무편람 제작
- 특히, 부서별로 소관 단위업무에 대해 기준과 절차, 운영 방법 등 업무처리의 표준화, 전문화하여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역량 제고
※ (근거)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(시행령 제62조제1항)

< 업무 추진 프로세스 >



< 행정업무편람 및 업무흐름도 >

총무처 총무과														
업무코드	업무분야		업무유형		공시, 지표									
업무 시기	1학기				하계방학				2학기				통계방학	
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	
	✓	✓	✓	✓	✓	✓	✓	✓	✓	✓	✓	✓		
업무 내용														
1. 관련규정														
순번	규정				메모									
1														
2. 협업부서														
순번	부서	협업내용(상세히)												
1														
3. 요구능력														
순번	요구능력	능력수준(상세히)												
1														
4. 담당자														
성명	직종	직위	현부서 발령일											

총무처 총무과	
업무 흐름도	업무 내용
[]	
↓	
[]	
↓	
[]	
↓	
[]	
↓	
[]	

② 이사회 운영 과정에 전문성 · 책임성 제고

① 이사회 운영 전문성 제고

□ 추진 배경

- 그간 법인과 대학이 전문성 한계로 견제와 균형 장치가 평균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그간 대학의 자율성 및 민주성 한계

- 임원진의 전문 영역에 따라 소위를 구성·운영하고 소위원회와 이사회
회의 이중장치를 통해 심의·의결 기능 강화

□ 추진 계획

❖ 법인 임원진 전문성 강화

- 이사 중, 기독교 대한감리회 10개 연회에서 교육이사 및 고등교육에
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추천받아 선임(10명)
※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24조(임원의 선임 및 방법)
- 임원진의 대학 회계·재무·경영·학사운영 등 그간의 경험과 법인 이사회
안건으로 상정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*를 구성·운영
* 교원인사·재정·기획 및 자산관리·규정·교원징계·직원징계·직원재심·
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·총장징계 및 기타 소위원회
※ 소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정비(2022학년도)

❖ 법인 임원 정기 연수회 운영

- 임원진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연수회를
실시하되, 이는 자체 연수 및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
-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, 대학은 교육과정의
자율적 의사결정 등 사학운영의 건전한 관계 형성

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강화

□ 추진 배경

-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미흡해 학교운영경비 부담에
있어 개선이 필요하며, 등록금 의존율 하락 및 기부금 비율도
지속 개선 필요

재정회계지표



구분	항목명	2016년	2017년	2018년	증감률
교육 투자	학생 1인당 교육비(백만원)	10.3	10.4	11.0	6.8%
	교육비환원율(%)	150.93	152.85	161.01	6.7%
	장학금 지급률(%)	19.28	20.68	21.99	14.1%
재무 안정성	이월금비율(%)	1.32	2.25	2.64	100.0%
	등록금 의존율(%)	57.23	60.22	55.41	-3.2%
	부채비율(%)	5.38	7.05	7.17	33.3%
법인 채무성	법인전임금비율(%)	0.42	1.24	0.38	-9.5%
	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(%)	12.65	13.21	14.32	13.2%
	학교운영경비 부담률(%)	0	0	0	-

Key Findings

- 학생 1인당 교육비, 교육비 환원율, 장학금 지급률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, 교육 투자 부분은 대체로 대학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
- 최근 3년간 재정 회계 지표 중 법인전임금 비율, 학교운영경비 부담율,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, 하위권으로 평가됨

* Source : 대학알리미

추진 계획

❖ 법인·대학 제도개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협력 수립

- 그간 대학중심으로 수립·운영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학교법인과 협력하여 작성하는 등 “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대학”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
-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를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학법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강화

❖ 수익용 재산 창출

- 유성스포츠센터 매각(2021. 266억 원)에 따른 대체 수익용 재산을 2022년 조기(早期)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임대료 수입 확보로 법인 전출금 지속 향상에 노력

③ 열린 이사회 운영

추진 배경

- 최근 사립대학의 각종 부정·비리와 갈등 발생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요구 강화
 - ※ 사립대학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(교육부, 2021.5.)

- 법인의 설립목적 준수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, 대학의 인사 및 조직, 정보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

❖ 회의록 공개 확대

- 현재 이사회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의 ‘학교법인’ 섹션에 공개 중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1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확대
 - ※ 다만, 이사회에서 공개기간을 따로 제한(制限)한 경우 별도 적용
- 또한, 비공개 항목을 점진적으로 축소

※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

- 1항 및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32조의 2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
- 1항에 의거 1년간 공개함.(단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)
- 법령으로 정한 공개기간 경과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
-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),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
❖ 법인 임원진과 대학 구성원의 주기적 간담회

-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(학생·교직원 등)간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열린 이사회 운영
 - ※ 2022년 하반기까지 시범 실시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 검토